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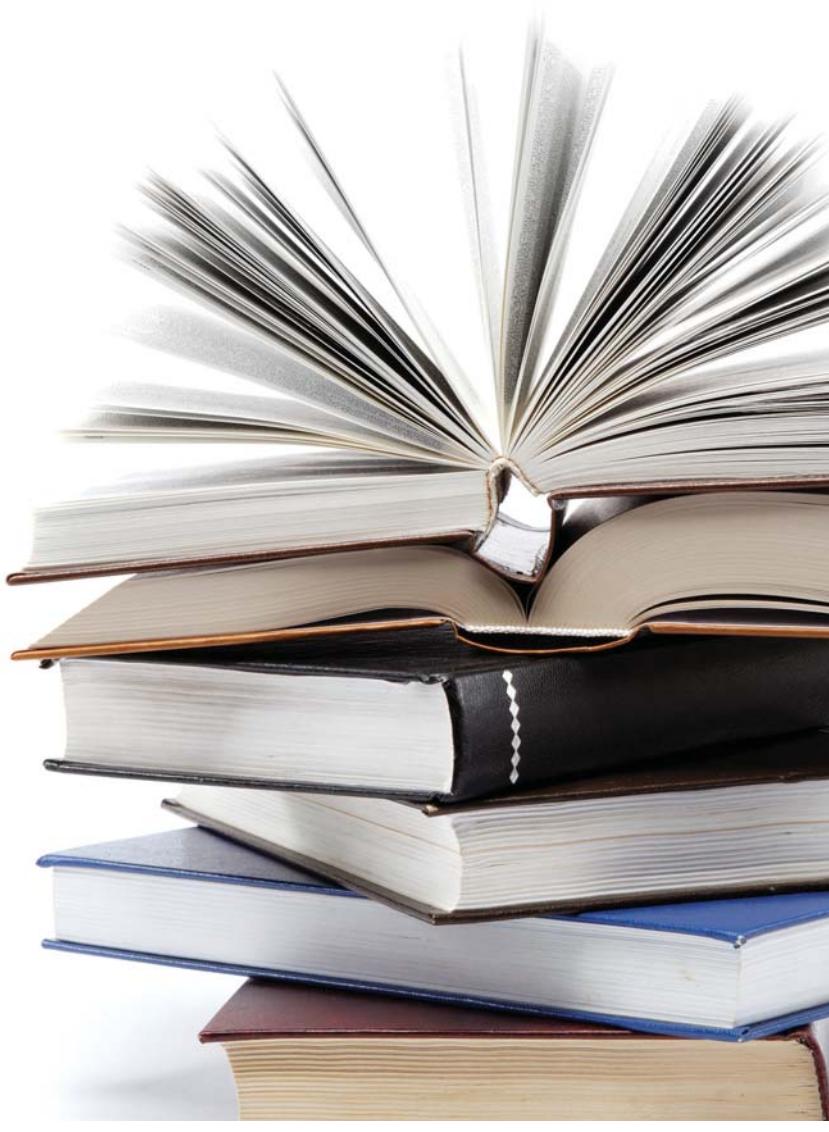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

조 혜 신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②

신청기관 : 공정거래위원회(경제분석과)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

연구자: 조 혜 신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2013. 8. 20.



[법제분석 요약]

○ 검토할 주요 문제

1.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분석
2.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조직의 존부
3. EU 경쟁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사례
4.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사례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운용에 주는 시사점

○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시정조치는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만약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통하여 손상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거나 동일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이 방지되지 않는다면, 경쟁법의 집행은 미완의 상태에 그치고 말 것임. 따라서 경쟁을 훼손하는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에 따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법위반행위가 다시 행해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법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침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조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임.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기능조약) 제101조 및 제102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Regulation 1/2003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광의의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음. 첫째, 위원회가 제101조 혹은 제102조의 위반으로 판단한 후 당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둘째, 위원회의 예비적 심사가 있은 후에 당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즉, 약정)을 위원회

가 수용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임. 구조적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은 (1) 행태적 시정조치로는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2) 행태적 시정조치와 구조적 시정조치가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법위반 사업자에게 행태적 시정조치가 더욱 부담이 되는 경우이며, (3) 법위반의 지속 혹은 재발의 위험이 법위반 사업자의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임.

- EU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04년 합병규칙(Merger Regulation)임. 기업결합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1) 허용, (2) 조건부 승인, (3) 금지 등 세 가지임. 이 중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된 경쟁제한의 우려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그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는 이른바 ‘시정방안(Remedies, Commitments)’을 제안하고 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여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를 종료하는 것임. 2001년 12월 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시정방안에 관한 접근방법을 담은 고시를 채택하였고, 2008년에 대폭 개정하였음.
- 현재 EU 경쟁위원회에는 별도로 시정조치의 설계만을 전담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EU 경쟁법상 제101조와 제102조가 금지하는 대상이 다름. 즉 제101조는 ‘합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합의를 파기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음. 예컨대 제101조에 따라 공동의 공급거절이 행해진 경우에 공급거절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원회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공급거절의 합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뿐, 공급을 명령할 수는 없음. 이 점에서 제102조에 따라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101조 하에서는 작위명령이 부과되지 않음.

-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하여, EU 경쟁법에서는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함.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에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위원회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위반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EU 경쟁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경쟁위원회가 아닌 결합당사회사의 주도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는 점, 실무적으로도 구조적 시정방안이 원칙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시정방안의 이행을 감독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목 차

I. 분석의 배경	1
II.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	2
1. 카르텔 및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3
2. 기업결합	7
III.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조직의 존부	8
IV. EU 경쟁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사례	10
1. 카르텔 (TFEU 제101조)	10
2.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TFEU 제102조)	14
3. 기업결합 (2004년 합병규칙)	20
V.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사점	22
1. 부당한 공동행위 (제19조)	22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3조의2)	23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7조)	25
참 고 문 현	27

I. 분석의 배경

- 경쟁법의 집행에 있어서 시정조치는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만약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통하여 손상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지 못하거나 동일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이 방지되지 않는다면, 경쟁법의 집행은 미완의 상태에 그치고 말 것임.
- 따라서 경쟁을 훼손하는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타당한 판단기준에 따라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러한 법위반행위가 다시 행해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법위반행위로 인한 경쟁질서 침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정조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는 동법상 주요 위법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제3조의2),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제7조),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각각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제5조, 제16조, 제21조).
- 그런데 동법상 시정조치의 근거에 따르면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제5조 및 제21조)’ 혹은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16조 제1항 제8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안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시정조치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안하도록 하고 있음.
- 물론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경우에는 법에서 부과 가능한 시정조치의 유형을 비교적 상세히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른바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적 폐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위와 같은 법의 규정태도는 문제가 된 사안에 가장 적합한 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고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 경쟁법제에 비하여 경쟁법의 집행경험이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됨.
- 이러한 점에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설계, 이행 및 감독에 관한 역량과 권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진 외국 경쟁당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그러한 목적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EU 경쟁위원회(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Competition)의 시정조치 관련 법령, 조직, 사례 등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고, 이로부터 우리 공정거래 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II.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 경쟁위원회의 의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음.¹⁾

- 1) 심의절차 종료(negative clearance)
- 2) 예외(exemption)
- 3) 중지명령(cease-and-desist orders)

1) Ritter, Braun & Rawlinson, European Competition Law: A Practitioner's Guide (Seco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p. 878.

- 4) 선언(declarations) 및 시정권고(recommendations)
- 5) 가처분(interim measures, temporary injunctions)
- 6) 과징금 납부명령(fines)

1. 카르텔 및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기능조약)²⁾ 제101조 및 제102조의 집행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Regulation 1/2003³⁾에 규정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동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현행 TFEU 제101조 및 제102조상 카르텔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2009년 12월 1일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공동체 설립에 관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발효된 ‘리스본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을 일컬음. 동조약에 따라 구 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번호가 각각 제101조 및 제102조로 변경되었음. TFEU 제101조와 제102조는 이른바 ‘EU 경쟁법’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회원국의 국내 경쟁법에 대하여 우위에 있으며, 그 근거는 Regulation 1/200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5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에 마련되어 있음. 즉 동 Regulation 1/2003 제3조에 따르면, 개별 회원국은 경쟁법의 입법과 법 적용에 있어서 제101조와 제102조를 직접 적용하며, 그 취지에 반하는 입법과 법 적용을 금지함. 다만 이러한 EU 경쟁법의 우위는 일방적인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국내 경쟁법상의 남용규제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업자의 행위가 회원국간의 거래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TFEU 제102조와 남용규제에 관한 해당 국내법이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가능함. 즉 TFEU 제101조의 카르텔 금지에서와는 달리, 회원국에게는 Regulation 1/2003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권적 영역 내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행위의 금지 혹은 제재를 위한 강화된 국내적 규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제3조 제2항 제2문 참조).

3) COUNCIL REGULATION (EC) No 1/2003 of 15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 101 and 102 of the Treaty.



- 동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광의의 시정조치에는 협의의 시정조치(remedies), 동의의결(commitments), 가처분(interim measures) 등 세 가지가 있음.

1) Regulation 1/2003 제7조 제1항

위원회가 신고에 의해서 혹은 직권에 의해서 조약 제81조 혹은 제82조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결정으로써 당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 법위반행위에 비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중지시키는데 필요한 행태적 혹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구조적 시정조치는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혹은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가 구조적 시정조치보다 당해 사업자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법위반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 동조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는 행태적 시정조치와 구조적 시정조치가 있는데, 이 중 행태적 시정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적 시정조치는 보충적으로 부과됨.
- 위원회가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행태적 시정조치로는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행태적 시정조치와 구조적 시정조치가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법위반사업자에게 행태적 시정조치가 더욱 부담이 되는 경우뿐임.

2) Regulation 1/2003 Recital (12)

동규칙은 위원회의 시정조치 부과에 관한 권한, 즉 행태적 혹은 구조적 시정조치 여부, 이들 중 어느 것이 비례의 원칙의 관점에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지시키는데 필요한지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구조적 시정조치는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혹은 그와 동등하게 효과적인 행태적 시정조치가 구조적 시정조치보다 당해 사업자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법위반 이전에 존재하던 사업자의 구조에 대한 변경은 바로 그 사업자의 구조로부터 법위반이 지속되거나 혹은 재발될 상당한 위험이 야기되는 경우에만 비례적일 것이다.

- 동법문에서는 위원회의 시정조치 부과는 ‘비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또한 보충적인 지위를 갖는 구조적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또 다른 요건으로서, 법위반의 지속 혹은 재발의 위험이 법위반 사업자의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⁴⁾

3) Regulation 1/2003 제9조 제1항

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예비적 심사(preliminary assessment) 단계에서 위원회가 표명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결정으로서 그러한 약속에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기한을 정하여 내려질 수 있으며, 위원회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4) Whish, *Competition Law* (Six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 252에서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예로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절하거나 하방시장의 경쟁사업자를 차별취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또 다른 예로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이윤압착(margin-squeezing)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경쟁위원회는 많은 경우에 정식 결정에 이르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방안(commitment)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의의결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있음. 하지만 오랫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2004년 동규칙 제9조에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임.

4) Regulation 1/2003 제8조

1. 경쟁에 대한 심각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직권으로 결정으로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을 근거로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제1항의 결정은 기간을 정하여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개신될 수 있다.

5) 소 결

- 광의의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음. 첫째, 위원회가 제101조 혹은 제102조의 위반으로 판단한 후 당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impose)하는 경우. 둘째, 위원회의 예비적 심사가 있은 후에 당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즉, 약정)을 위원회가 수용(accept)하고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 구조적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 요건은 (1) 행태적 시정조치로는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혹은 (2) 행태적 시정조치와 구조적 시정조치가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는 있으나 법위반 사업자에게 행태적 시정조치가 더욱 부담이 되는 경우이며, (3) 법위반의 지속 혹은 재발의 위험이 법위반 사업자의 구조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임.

2. 기업결합⁵⁾

- EU 경쟁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TFEU가 아닌 2004년 합병규칙(Merger Regulation)⁶⁾임. 기업결합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1) 협용, (2) 조건부 승인, (3) 금지 등 세 가지임. 이 중 조건부 승인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위원회에 의해서 제기된 경쟁제한의 우려를 상쇄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그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는 이른바 ‘시정방안(Remedies, Commitments)’을 제안하고 위원회가 이를 수락하여 일정한 조건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를 종료하는 것임.
- 시정방안은 크게 ‘구조적 시정방안(Structural Remedy)과 ‘비구조적 내지 행태적 시정방안(Non-structural or Behavioral Remedy)’으로 대별됨.⁷⁾ 전자는 시장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사업의 (분할) 매각, 단순한 지분매각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생산설비 등의 제3자 개방이나 비차별적 접근 보장, 강제라이선스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음.
- 2001년 12월 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시정방안에 관한 접근방법을 담은 고시⁸⁾를 채택하였고, 2008년에 대폭 개정하였음.⁹⁾ 개정 고시에서 중요한 사항은 기업분할 이외의 시정방안은 분할매각과 그 효과 면에서 동등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후 모니터링의 곤란함과 조치의

5) 이와 관련하여, 이봉의, 「EU의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경쟁저널』 2010. 1. 10면 이하 참조.

6) Regulation 139/2004 OJ [2004] L 24/1.

7) 이하 이 단락의 설명은 이봉의, 주 5)의 글, 15면 참조.

8) Commission, Notice on remedies acceptable under Council Regulation No. 4064/89 and under Commission Regulation No. 447/98.

9) Commission, Notice on remedies acceptable under Council Regulation No. 139/2004 and under Commission Regulation No. 802/2004, OJ C 267, 22. 10. 2008.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매각 이외의 시정방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임(paras. 14, 61).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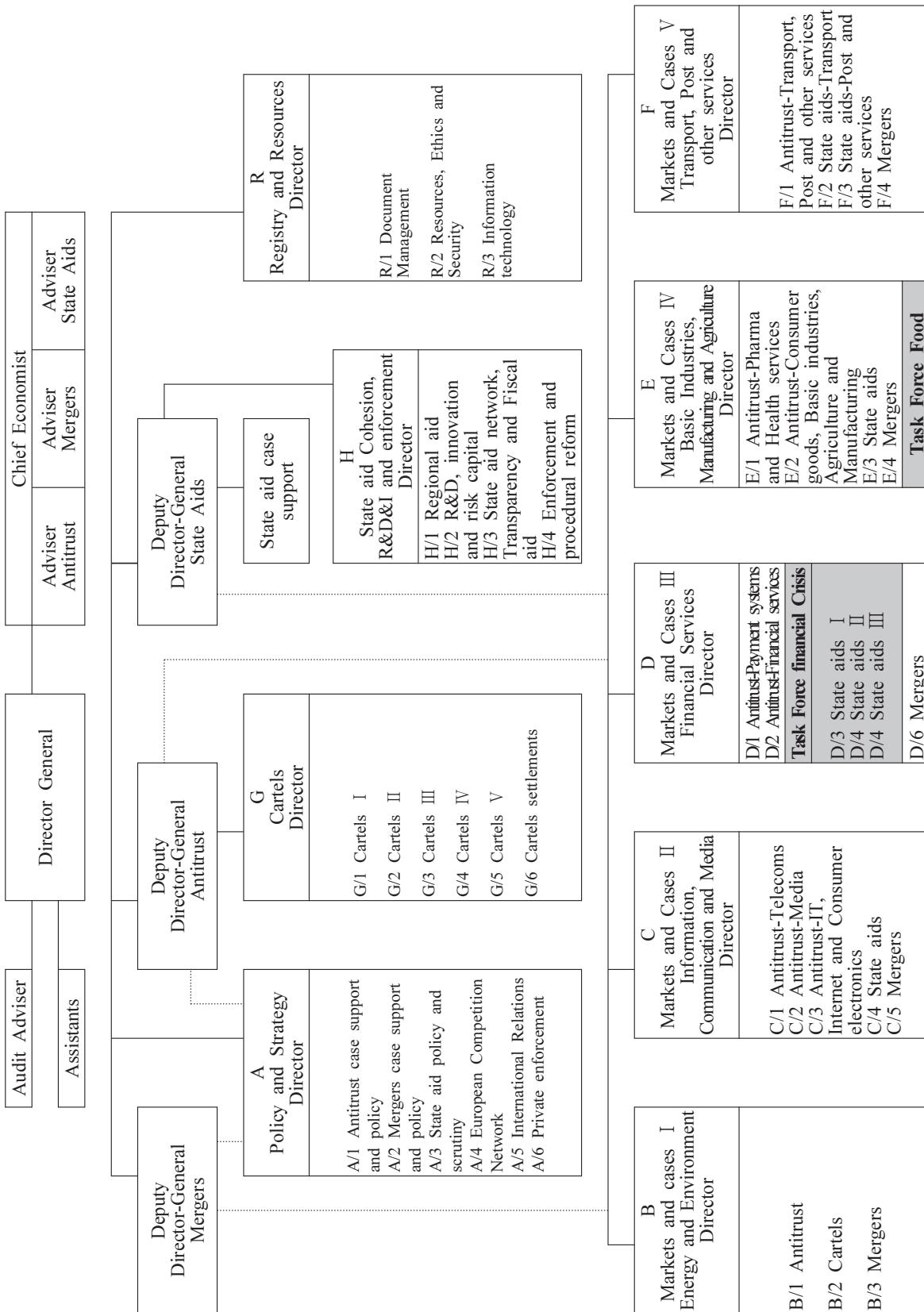
III.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조직의 존부

- 아래의 EU 경쟁위원회 조직도¹¹⁾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을 담당하는 A/6와 카르텔 조정(Cartels settlements)을 담당하는 G/6 이외에, 별도로 시정조치의 설계만을 전담하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2년 3월에 발간된 경쟁위원회의 경쟁법 집행 절차에 관한 매뉴얼(Antitrust Manual of Procedures - Internal DG Competition working documents on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and 102 TFEU)¹²⁾에도 1/2003 Regulation 제23조 관련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제19장은 목차에 작성중(under construction)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10) 이봉의, 주 5)의 글, 14면.

11) http://ec.europa.eu/dgs/competition/directory/organi_en.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래의 표에서 담당자의 이름은 생략하였음.

12) 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information_en.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





IV. EU 경쟁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시정조치 사례

- 이하에서는 시정조치를 중심으로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사례를 살펴보고, 동의의결 및 가처분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1. 카르텔 (TFEU 제101조)

- TFEU 제101조에 위반하는 카르텔에는 경쟁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합의인 수평적 카르텔과 생산 혹은 유통단계를 달리하는 거래상대방과의 경쟁제한적 합의인 수직적 카르텔의 두 가지가 있음.

1) 수평적 카르텔

- Atlantic Container Line AB 사건¹³⁾: 위원회는 'TAA(Trans-Atlantic Agreement)'에 참가한 사업자들간의 가격고정에 관한 수평적 합의를 금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래조건에 관하여 새로이 협상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을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음.

제 1 조

가격고정과 용량에 관한 TAA(Trans-Atlantic Agreement)의 조항은 EC조약 제85조 제1항의 위반임.

제 2 조

위 제1조의 TAA 조항에 대해 EC 조약 제85조 제3항 및 Regulation (EEC) No 1017/68 제5조는 적용되지 않음.

13) Commission Decision of 19 October 1994 (IV/34.446 - Trans-Atlantic Agreement), OJ L 376/1.

제 3 조

동심결의 피심인 사업자들은 위 제1조에 적시된 법위반행위를 중단하여야 함.

제 4 조

동심결의 피심인 사업자들은 장래에 위 제1조에서 적시된 합의 내지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목적 내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떠한 합의 내지 동조적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제 5 조

동심결의 피심인 사업자들은 동심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신들과 TAA와 관련하여 서비스계약 및 기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구매자들에 대하여 이들이 원할 경우 그러한 계약조건을 재협상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그러나 CFI(제1심법원)¹⁴⁾는 이 사건 항소심¹⁵⁾에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에 대하여 이제 자신들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이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한 시정명령인 제5조를 취소하였음. 그 이유는 이러한 시정명령이 당해 법위반행위를 중지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임.

2) 수직적 카르텔

- VW/Audi 사건¹⁶⁾: 위원회는 VW/Audi가 자사의 판매업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판매업자들과의 거래를 금지한 이 사

14) 일반적으로 ‘유럽제1심법원’으로 번역되어 왔던 CFI는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의 발표로 ‘General Court(GC’로 약칭)’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판결들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들이므로 판결 당시의 명칭인 CFI를 사용하도록 함.

15) Case T-395-94 Atlantic Container Line AB v. Commission [2002] ECR II 875.

16) Commission Decision of 28 January 1998 (Case IV/35.733 - VW) OJ L 124/60.



건 수직적 카르텔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및 재발방지를 명하면서, 이들에게 기존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각종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계약을 수정하도록 하였음.¹⁷⁾

제 1 조

Volkswagen AG와 그 계열회사인 Audi AG 및 Autogerma SpA는 이탈리아의 판매업자들과 다른 회원국 소비자 및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공식 판매업자들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EC 조약 제8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제 2 조

Volkswagen AG는 위 제1조의 법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제한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됨. 특히 Volkswagen AG는 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 (a) 판매가 계약상의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다른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너스 지급이 결정되지 않도록 이탈리아의 공식판매점들과의 계약을 수정해야 함;
- (b) 이탈리아의 공식판매점들에 대하여 통지문을 발송하여 1994년 10월 20일 및 11월 2일의 통지문에 기재된 이윤체계(margins scheme)가 폐지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함;
- (c) 이탈리아의 공식판매점들에게 통지문을 발송하여 다른 회원국에 있는 판매업자들과의 교차배송에 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하

17) 앞서 살펴본 Atlantic Container Line AB 사건에서 CFI(현 GC)는 거래상대방들에게 재협상 혹은 해지가 가능함을 고지하도록 한 시정명령이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본 반면, 이와 유사하게 계약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이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CFI의 항소심 및 ECJ의 상고심에서 다투어지지 않았음. 생각건대 이는 수평적 카르텔과 수직적 카르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즉 수평적 카르텔에 대한 시정조치는 (앞서 살펴본 Atlantic Container Line AB 사건에서의 가격고정과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쟁자간의 합의만을 대상으로 할 뿐 그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참가사업자들 각자가 거래상대방과 형성한 거래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 반면, 수직적 카르텔에서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의 조건으로서 경쟁제한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거래조건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일 것임.

고, 더 이상 수입업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른 회원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이유로 공급제한이나 판매점 계약의 해지와 같은 제재의 위협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할 것;

- (d) VW/Audi 판매망에 있는 모든 유럽공동체의 공식판매점들에 대하여 통지문을 발송하여 이탈리아와 다른 회원국간의 교차배송에 관한 모든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함;
- (e) 계열회사인 Audi AG로 하여금 통지문을 발송하여 유럽공동체 내에 있는 모든 판매점들에게 (a)부터 (d)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계열회사인 Autogerman SpA로 하여금 통지문을 발송하여 이탈리아 판매점들에게 (a)부터 (c) 사항을 고지하도록 할 것.

- Van den Berg Foods 사건¹⁸⁾: 위원회는 아이스크림 소매업자들과 배타적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수직적 카르텔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명하는 동시에, 그러한 계약을 체결 한 거래상대방에게 그 배타성 조항이 무효임을 통지하도록 함.

제 1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와 아일랜드의 소매업자 사이에 체결된 냉동저장 계약에서, 개별포장된 아이스크림의 저장을 위하여 Van den Bergh Foods Limited가 공급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냉동고를 보유한 소매점에서의 냉동고 설치와 소매업자들이 스스로 조달한 냉동고 혹은 Van den Bergh Foods Limited가 아닌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업자에 의하여 공급된 냉동고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성 조항은 EC조약 제85조 제1항의 위반임.

제 2 조

위 제1조에서의 배타성 조항이 EC조약 제85조 제3항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는 Van den Bergh Foods Limited의 주장을 기각함.

18) Commission Decision of 11 March 1998 (Case IV/34.073, IV/34.395 and IV/35.436 Van den Bergh Foods Limited) OJ L 246/1.



제 4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는 위 제1조 및 제3조에서 명기한 법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목적 내지 효과를 갖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됨.

제 5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는 동심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가 현재 EC조약 제85조 제1항에 위반하는 냉동저장 계약을 맺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위 제1조 및 제3조의 전문을 고지하고, 이들에게 문제의 배타성 조항이 무효임을 통지하여야 함.

2.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TFEU 제102조)

- TFEU 제102조에 위반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는 여러 가지 행위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행위유형에 따라서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방법도 달라지므로 시정조치 역시 행위유형별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1) 거래거절

- Microsoft 사건¹⁹⁾: Microsoft사의 남용적 공급거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시정조치는 공급명령이고,²⁰⁾ 구체적으로 MS의 경쟁상품들이 MS의 Windows와 호환되는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PC 제조업자들이나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경우 Windows Media Player가 없는 버전을 제공하도록 명령하였음.²¹⁾

19) Commission Decision of 24. 03. 2004 (Case COMP/C-3/37.792 Microsoft).

20) para. 998.

21) 한편 위원회는 동심결에서 MS가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수탁자(trustee)을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CFI)은 위원회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독립적인 감독관리인을 선임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고 판

- Magill TV Guide 사건²²⁾: ITP, BBC, RTE 등 방송사업자가 각자의 주간 방송프로그램 목록의 제공을 거절한 이 사안에서, 위원회는 목록의 제공을 명령하고 그 제공과 관련된 조건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을 부과함.

제 1 조

ITP, BBC, RTE 각각의 아일랜드 및 북부아일랜드에서 시청 가능한 주간 프로그램 목록과 관련된 행위는, 아일랜드 및 북부아일랜드에서의 주간 종합 TV가이드의 발간을 방해하는 범위 내에서 제86조 위반에 해당함.

제 2 조

ITP, BBC, RTE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상호간에 및 제3자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프로그램 목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한 프로그램 목록의 재발간을 허용함으로써, 위 제1조의 법위반행위를 중지하여야 함. 이러한 의무가 목록 그 자체가 아닌 정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만약 이들이 라이선스 방식으로 목록의 재발간을 허용하기로 하는 경우, ITP, BBC 및 RTE가 요구하는 로열티는 합리적이어야 함. 또한 ITP, BBC 및 RTE가 제3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의 품질, 소수집단 및/혹은 지역의 요구, 문화적, 역사적, 교육적 중요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음. 따라서 피심인들은 동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결정의 대상이 된 주간 프로그램 목록의 발간이 허용되어야 하는 제3자에게 부과되는 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안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함.

단하였음. Case T-201/04 Microsoft Corp. v. Commission [2007] ECR II-000, paras. 1251-79.

22) Commission Decision of 21 Dec. 1009 (Case IV/31.851 - Magill TV Guide/ITP, BBC and RTE), OJ L 78/43.



2) 끼워팔기

- Tetra Pak II 사건²³⁾: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각종 남용 행위의 중지 및 반복금지와 더불어, 끼워팔기 관련 거래조건을 개정 혹은 삭제하도록 명령함.

제 1 조

액체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 및 포장용기에 관한 이른바 살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Tetra Pak은 적어도 1976년 이래 살균 시장과 그 인접 및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거나 그가 획득한 지위를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수단으로, ECC 조약 제86조를 위반하였음. 그러한 법위반의 본질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1. 공급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공동체 내 회원국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마케팅을 시도함;
2. 모든 회원국의 Tetra Pak 상품 사용자에 대하여, 이들은 Tetra Pak에 부당하게 구속하고 인위적으로 잠재적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부과함;
3. 포장용기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용자간에 차별적 가격을 부과함;
4. 기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원국에 있는 사용자간에 차별적 가격을 부과하고,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동일한 회원국 내에 있는 사용자간에 차별적 가격을 부과하고, 적어도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가격을 부과함;
5. 적어도 이탈리아에서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자와 그들의 기술을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를 함.

제 3 조

Tetra Pak은 제1조에 명시된 법위반행위를 이미 행하여진 것에 관한 한 즉시 중지하여야 함.

23) Commission Decision of 24 July 1991 (IV/31043 - Tetra Pak II) OJ L 72/1.

이를 위하여 Tetra Pak은 제1조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유지하지 말아야 하며,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됨.

특히, Tetra Pak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Tetra Pak은, 위원회에 의하여 남용으로 판단된 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기계 구매/임대 계약과 포장용기 공급계약에서 위원회가 지적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삭제하여야 함;
2. Tetra Pak은 다양한 회원국에서 자신의 상품에 부과하는 가격간의 차이가 오로지 구체적인 시장조건으로부터만 기인하도록 하여야 함. 공동체 내의 모든 구매자는 그가 선택한 Tetra Pack 자회사로부터, 그가(Tetra Pak의 자회사가) 설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해야 함;
3. Tetra Pak은 약탈적 혹은 차별적 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그 어떤 구매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할인을 제공하거나 유리한 지급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포장용기에 대한 할인은 오로지 각 주문의 수량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하며, 포장용기에 서로 다른 종류에 대한 주문이 그러한 목적으로 합산되어서는 안 됨;
4. Tetra Pak은 그 주문자가 Tetra Pak 상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의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주문을 거절하여서는 안 됨;
5. Tetra Pak은 기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모든 구매자에게 자신의 기계에 사용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포장용기의 규격을 고지하여야 함.

3) 배타조건부거래행위

- Van den Berg Foods 사건²⁴⁾: 위원회는 아이스크림 소매업자들과 배타적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대하여 이를 수직적 카르텔로서 금지하는 동시에,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도 금지

24) Commission Decision of 11 March 1998 (Case IV/34.073, IV/34.395 and IV/35.436 Van den Bergh Foods Limited) OJ L 246/1.



하였음.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카르텔의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명령,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게 그 배타성 조항이 무효임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임.

제 3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가 아일랜드의 소매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조달하거나 다른 아이스크림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냉동고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개별포장 아이스크림의 저장을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냉동고를 공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배타성의 계약을 받는 냉동저장 합의를 체결하도록 하고, 무료로 그 냉동고를 보유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EC조약 제86조의 위반임.

제 4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는 위 제1조 및 제3조에서 명기한 법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동일한 목적 내지 효과를 갖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됨.

제 5 조

Van den Bergh Foods Limited는 동심결이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가 현재 EC조약 제85조 제1항에 위반하는 냉동고 계약을 맺고 있는 소매업자들에게 위 제1조 및 제3조의 전문을 고지하고, 이들에게 문제의 배타성 조항이 무효임을 통지하여야 함.

4) 차별취급

- Irish Sugar 사건²⁵⁾: 위원회는 차별적 요금 혹은 리베이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매자들에게 기존의 리베이트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음을 통지하도록 하였음.

25) Commission Decision of 14 May 1997 (IV/34.621, 35.059/F-3 - Irish Sugar plc) OJ L 258/1.

제 3 조

Irish Sugar plc는 제1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적시된 법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

Irish Sugar plc는 제1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적시된 어떠한 행위도 반복하여서는 안 되며,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안 됨.

특히 Irish Sugar plc는 산업용 설탕 고객과의 동등한 거래에 대하여, 공급설탕의 수량 및 거래비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쟁 설탕 포장업자를 차별하는, 설탕 수출 리베이트를 및 기타 리베이트와 같은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안 됨.

Irish Sugar plc는 다른 설탕 포장업자의 경쟁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쟁 포장업자의 구매자에 대한 선택적 가격설정과 설탕 소매업자에 대한 목표리베이트의 부과와 같은, 설탕 가격 정책을 채택하여서는 안 됨. Irish Sugar plc은 동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정한 수량의 달성이거나 구매수량의 증가를 조건으로 현재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았던 구매자들에게 서면으로 그와 같은 리베이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통지하여야 함.

5) 가격남용

- United Brands 사건²⁶⁾: 위원회는 부당한 가격결정과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하여 법위반행위, 즉 부당한 가격설정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의결 이후 약 2년 동안 위원회에 가격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제 1 조

United Brands Company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EEC 조약 제86조를 위반하였음:

26) Commission Decision of 17 December 1975 (Case IV/26699 - Chiquita) OJ L 95/1.



- (a)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고 네덜란드의 유통업자(distributor/ripeners)에 대하여 자사의 바나나를 덜 익은 상태에서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함;
- (b) Chiquita 바나나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거래상대방, 즉 앞서 언급된 회원국에 소재한 Scipio Group 이외의 유통업자에게 동등한 거래에 대하여 차별적 가격을 부과함;
- (c) Chiquita 바나나의 판매에 있어서 (Scipio 그룹이 아닌)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덴마크, 네덜란드 및 독일의 구매자들에게 부당한(unfair) 가격을 부과함;
- (d) 1973년 10월 10일부터 1975년 2월 11일까지 Th. Oleson A/S, Valby, Copenhagen, Denmark에 대하여 Chiquita 바나나의 공급을 거절함.

제 3 조

- (a) United Brands Company는 제1조에 명시한 법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함.
- (b) United Brands Company는
 - (i)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에 있는 자사의 모든 유통업자에게 덜 익은 바나나의 재판매금지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하고, 1976년 2월 1일까지 위와 같이 실행하였음을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함;
 - (ii) 1976년 4월 2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2년간 1월 20일과 7월 20일 전까지 매년 2회,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의 구매자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부과한 가격을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함.

3. 기업결합 (2004년 합병규칙)

- 2004년 합병규칙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시정조치를 고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정조치의 결정은 결합당사회사들이 제안하는 시정방안

(Commitments)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임. 따라서 심결문 말미에 일종의 ‘부속서(Annex)’로서 결 합당사회사들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첨부하고, 심결문의 주문을 통하여 그 부속서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 Sonoco/Ahlstrom 사건²⁷⁾

제 1 조

Sonoco와 Ahlstrom이 Regulation (EEC) No 4064/89의 Article 3(1)(b)에 따른 합작기업을 구성하는 신회사 Sonoco-JV S.a.r.l.에 대한 공동지배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동시장 및 EEA 조약의 기능에 부합함.

제 2 조

제1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완전한 준수를 조건으로 함:

- (a) 부속서 1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들이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인수자와의 인수계약에 서명할 때까지 기업결 합을 이행하거나 완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 (b) 부속서 4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Sveberg, Norway에 소재 한 Ahlstrom의 핵심 생산설비의 매각에 관한 약정;
- (c) 부속서 5단락 내지 9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존가능성 (viability), 매각가능성(marketability), 경쟁력(competitiveness)의 유지, 그리고 분리(hold-separate) 및 용도지정(ring-fencing) 의무와 관련된 약정;
- (d) 부속서 10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제기 금지와 관련된 약정;
- (e) 부속서 2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지기간 내 최종매각 및 인수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정;
- (f) 부속서 14단락 및 15단락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절한 인수 자와 관련된 약정;
- (g) 부속서 22단락 및 23단락에서 지시하는 바와 같이, 결합당사회사들

27) Commission Decision of 6. 10. 2004, Case No. COMP/M.3431 - Sonoco/Ahlstrom.



로 하여금 그들의 약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탁자(Trustee)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

V.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사점

1. 부당한 공동행위 (제19조)²⁸⁾

- EU 경쟁법상 제101조와 제102조가 금지하는 대상이 다름. 즉 제101조는 ‘합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합의를 파기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음.²⁹⁾³⁰⁾ 예컨대 제101조에 따라 공동의 공급거절이 행해진 경우에 공급거절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위원회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공급거절의 합의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뿐, 공급을 명령할 수는 없음. 이 점에서 제102조에 따라 거래거절이 금지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음.³¹⁾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101조 하에서는 작위명령이 부과되지 않음.³²⁾
- 앞서 본 시정조치 사례에서도 수평적 카르텔에 관한 시정조치로서 카르텔의 참가사업자들의 구매자들에게 계약의 해지 혹은 거

28)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9) Whish, 주 4)의 책, p. 251.

30) 물론 이러한 ‘합의의 파기’ 명령에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 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그 사업자간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제19조 제4항), 법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를 굳이 파기해야 할 필요가 없음. 권오승, 『경제법』(제10판), 법문사, 2013, 290면 참조.

31) Whish, 주 4)의 책, p. 251.

32) Ritter, Braun & Rawlinson, 주 1)의 책, p. 882.

래조건의 재협상이 가능함을 통지하도록 한 명령이 항소심에서 취소된 바 있음. 이로 보건대 카르텔에 대한 시정조치는 당해 경쟁제한적 ‘합의의 파기’ 수준에 머무를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격 혹은 거래조건을 형성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공정거래법상 제21조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가격협정이 있기 이전의 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의 인하를 명할 수 없다고 보는 우리나라 학설의 일반적 견해와도 일치함.³³⁾
- 다만 수직적 카르텔에서는 합의의 파기가 곧 거래조건 그 자체의 수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시정조치로서는 거래상대방에게 종전의 거래조건 내지 거래상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통지하도록 하거나, 수평적 카르텔과는 달리 계약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아직은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공동행위로서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 모두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은바, 향후 공동행위의 시정조치를 설계할 때에도 그러한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3조의2)³⁴⁾

- EU 경쟁법에서는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구조적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조정으로 사건을

33)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186면(이호영 집필부분); 권오승, 주 30)의 책, 291면.

34)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결시킨다고 함.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에서는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위원회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위반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기존의 시정조치는 주로 법위반행위의 중지 정도에 머무르고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무부과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이 점에 있어서 행위유형별로 다양하게 또한 상당히 강력한 작위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설계된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있어서 특이점은 ‘가격의 인하’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가격 혹은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난점이 있음. 현재로서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난점 중 하나인 시정조치 문제도 미리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가격으로의 인하를 강제하지 않고, 법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위원회에 가격보고의무를 부과한 EU 경쟁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7조)³⁵⁾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³⁶⁾ 이들 연구에서 EU 경쟁위원회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경쟁 위원회가 아닌 결합당사회사의 주도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는 점, 실무적으로도 구조적 시정방안이 원칙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35)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 (중략) ... 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 (중략) ... 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 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6) 대표적으로 이봉의, 주 5)의 글;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 조치에 관한 심결례」, 『경쟁법연구』 제11권, 2005;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저스티스』 제90호, 2006. 4 등이 있음.



잡고 있다는 점, 시정방안의 이행을 감독하는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시사점들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지침」³⁷⁾을 정비하는데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임.

37) 2011. 6. 22.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3호.

참 고 문 헌

- 권오승 외,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 권오승, 『경제법』(제10판), 법문사, 2013.
- 이민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관한 심결례」, 『경쟁법연구』 제11권, 2005.
- 이봉의, 「EU의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의 시정조치」, 『경쟁저널』 2010. 1.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재검토」, 『경쟁법연구』 제20권, 2009.
- 이호영,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저스티스』 제90호, 2006. 4.
- Antitrust Manual of Procedures - Internal DG Competition working documents on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and 102 TFEU(http://ec.europa.eu/competition/antitrust/information_en.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
- OECD, *Remedies and Sanctions in Abuse of Dominance Cases*, OECD DAF/COMP (2006) 19, 15 May 2007.
- Ritter, Braun & Rawlinson, *European Competition Law: A Practitioner's Guide* (Seco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 Whish, Richard, *Competition Law* (Six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EU Commission Decision 검색

EU 경쟁위원회 사이트:

http://ec.europa.eu/competition/elojade/isef/index.cfm?clear=1&policy_area_id=1,2,3

EUR-Lex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Communities 검색) 사이트:

<http://eur-lex.europa.eu/JOIndex.do?ihmlang=en>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3-25-②
EU 경쟁위원회의 시정조치 관련 사례 분석

2013년 8월 17일 印刷
2013년 8월 20일 發行

發 行 人 원장직무대행 전 재 경
發 行 處 한국법제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31(양재동90-4)
전 화 : (02)579-0090
등록번호 : 1981.8.11. 제01-0190호
<http://www.klri.re.kr>

원가 5,500원

1.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249-0 93360